

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 
(이호대 의원 대표발의)

제 안 설 명

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이호대  
(더불어민주당, 교육위원회)

- 최기찬 위원장님과 선배·동료 의원 여러분!  
구로 제2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호대 의원입니다.  
「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  
-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 
본 조례안은 잘못된 약어 및  
문법 상 맞지 않는 규정의 사용을 통해  
자치법규에 대한 일반 주민의 접근을 보다 쉽게하여  
법규에 대한 시민 신뢰를 제고하고자 합니다.
  
- ‘단체에게’를 ‘단체에 대하여’로,  
‘교육감’을 ‘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’로  
개정함으로써 어문 규정에 맞는 표기로의 수정을 통해  
법령 적합성과 행정 신뢰성 등을 높이고자 합니다.
  
-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인쇄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,  
본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 
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
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